

7. 세금

가. 조세제도

법인세

- 법인 소득세(Corporate Income Tax)

스리랑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법인들은 주류와 담배의 제조 및 유통(40%)을 제외하곤 28% 정상세율(2011년 4월부터 정상세율이 35%에서 28%로 조정)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. 그러나 BOI회사의 경우 투자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가 100% 면제(Tax Holiday), 10% 또는 15%의 특혜 법인세(Concessionary rate)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BOI와의 협상이 필요하다.

일반기업일 경우에도 관광, 수출 및 과세소득이 500만 루피(약 4만 6,000달러)를 초과하지 않으면 양허세율인 12%를 부담한다. 원래 동 양허세율은 외국인 지분이 25%를 넘지 않는 기업에 한정되도록 규정화돼 있으나, 우리나라 진출기업들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거 외국인 지분이 25%를 넘지 않는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돼 있다.

개인소득세

모든 개인은 개인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다. 연 소득 50만 스리랑카 루피 미만은 면제이며, 그 이상의 경우에는 a sliding rate scale 계산방식에 의해 부과된다.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, 세율과 면세구간이 역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민간소비 위축이 우려된다.

- 500,001~600,000 루피: 4%
- 600,001~1,200,000 루피: 8%
- 1,200,001~1,800,000 루피: 12%
- 1,800,001~2,400,000 루피: 16%
- 2,400,001~3,000,000 루피: 20%

그 이상의 소득에는 24%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.

도박, 술, 담배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40%의 소득세를 납부한다.

부가가치세

기존 매출액의 12%를 부과하던 VAT는 2016년 5월 2일 국회법 통과 후 15%로 적용됐다.

특별소비세

특정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CESS라는 세금을 부과하는데, 종량 혹은 종가세 방식으로 품목별로 1%에서 35%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.

- 품목별 확인은 다음의 링크 참조: <http://www.customs.gov.lk/public/files/tariff/cess2018.pdf>

국가재건세(NBT)

기존에 NBT가 있었으나, 2019년 12월 1일부터 폐지되었음.



국가정보(투자-세금) 항목은 "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"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